

의안번호	제396호
의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9월 6일

#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96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6일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,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이 개정·시행(‘23.06.13.)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의2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13조의2(시간외근무시간 저축</u></p> <p><u>연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</u></p> <p><u>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</u></p> <p><u>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</u></p> <p><u>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</u></p> <p><u>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

## 관 계 법령

### 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
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13.>

**제7조의10(연가의 저축)**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13.>